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- 문 3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.
 - ③ 지역위원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④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역위원회가 심의·조정하는 사항에 속하는데, 그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.
- 문 3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‘지역대책본부’라 함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대책본부의 장은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설치·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문 4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구조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.
- ㄴ.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·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ㄷ. 안전도가 '미흡'으로 구분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ㄹ. 안전도가 '미흡'으로 구분되었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는 경우, 그 사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다.

- ① ㄱ, ㄹ
- ② ㄴ, ㄷ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
문 41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(가)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(나)에(게) 보고하여야 한다.
- 정부합동 안전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(다)에(게) 통보하여야 한다.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험구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(라)단위로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	<u>(가)</u>	<u>(나)</u>	<u>(다)</u>	<u>(라)</u>
①	안전정책조정위원회	국무총리	정부합동안전점검단	1년
②	중앙안전관리위원회	국무총리	행정안전부장관	1년
③	안전정책조정위원회	국회 소관상임위원회	행정안전부장관	5년
④	중앙안전관리위원회	국회 소관상임위원회	정부합동안전점검단	5년

문 42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재난관리자원으로서 비축·관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기·통신 기자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
- ㄴ. 시·도지사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ㄹ.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장은 관할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,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인접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보수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
문 43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급한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.
- ③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 통제단장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선박의 점유자에게 그 선박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, 그 점유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문 44. A군의 군수 甲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, 2022. 3. 1. 해당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축물(乙 소유 및 거주)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은 긴급한 경우 乙에게 목적·기간·대상 및 내용 등을 적은 응급부담 명령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수 있고, 그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② 甲은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A군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甲은 2022. 5. 29.까지 乙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, 乙은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문 45. 홍수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A도 B군 거주자인 甲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甲에 대한 지원으로서 통신요금, 전기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.
- ③ 甲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된 경우, 甲은 건물 수리를 담당한 건축업자 乙에게 수리비를 포함한 복구비 전액에 대한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.
- ④ 甲이 복구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서는 B군수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선지급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다.

문 46. A시의 최근 3년(2019 ~ 2021)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,0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A시의 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도 10억 원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A시의 장은 2억 1,000만 원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A시의 의무예치금액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④ 2021년까지 A시의 누적 의무예치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년 의무예치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.

문 4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A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A시의 장은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작업 등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를 하고자 하였다. 이를 위해 A시의 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인 B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응원을 요청하였다. 이 요청에 응하여 B기관의 긴급구조 지원요원 甲은 화재복구 및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다. 甲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乙 및 아들 丙(18세), 어머니 丁이 있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응원을 요청받은 B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.
- ㄴ. A시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B기관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다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.
- ㄷ. 甲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「민방위 기본법 시행령」을 준용한다.
- ㄹ. 丙은 甲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
문 4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A시 B 지역에 A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인 X사고가 발생하였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X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A시의 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ㄴ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ㄷ. X사고로 발생한 B 지역의 피해가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.5배를 초과한다면,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B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ㄹ. X사고로 B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①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

